

연구원 임용 규정

제정	:	2003. 10. 1.
개정	:	2006. 9. 1.
개정	:	2014. 4. 1.
개정	:	2022. 2. 25.
개정	:	2025. 8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임용,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연구원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신분) 연구원은 교원인사규정의 교원과는 구분되나 교원에 준한 신분을 가진다.

제4조(구분 및 자격) ① 연구원은 유급연구원, 기금연구원, 무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며,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2. 2. 25.>

② 연구원의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25.>

1. 책임연구원: 박사학위 취득자로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
2. 선임연구원: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3. 연구원: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취득자

제5조(임용절차) 연구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급연구원 : 해당 부서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2. 기금연구원 :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3. 무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: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소속부서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의 재임용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급여) ① 유급연구원의 급여는 교비에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기금연구원의 급여는 해당 부서의 기금에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보조연구원의 급여는 해당 부서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경력) 연구원의 경력환산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복무) 연구원의 복무는 임용계약서에 의하되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의1(재임용) ① 재임용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.

1. 교학지원처에서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연구원 소속기관장에게 재임용 심사평정을 의뢰한다. <개정 2025. 8. 1.>
2. 소속기관장은 해당연구원의 재임용 심사평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평정을 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5. 8. 1.>
3. 교학지원처는 교학지원처장의 재임용 심사평정을 합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25. 8. 1.>
4. 교학지원처는 재임용이 부결된 해당 연구원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고, 재임용이 가결된 해당연구원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재임용을 신청한다. <개정 2025. 8. 1.>

② 재임용 심사평정 방법

1. 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표는 별지1로 한다.
2. 심사평정은 교학지원처장과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 8. 1.>
3. 심사평정의 평가영역은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, 연구 또는 강의실적,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.
4. 평가영역별 평점 등급 및 배점, 평가정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등급	배점	평가정도
A	5	매우우수
B	4	우수
C	3	보통
D	2	미흡
E	1	매우미흡

5. 재임용을 위한 평가영역별 배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이때 평균값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(교학지원처장 평가영역별 배점 + 소속기관장 평가영역별 배점)/2 <개정 2025. 8. 1.>

6. 재임용을 위한 평가영역별 배점 결과 또는 계약을 위반한 다음의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.

- 1) 평가영역별 배점 평균이 영역 이상에서 2.0 미만의 배점을 받을 경우
- 2) 평가영역별 배점 평균의 전체합이 9.0 미만인 경우
- 3) 연구중심의 연구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와 강의중심의 연구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강의시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개정규정 이전에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재임용 시점부터 재임용 1회로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연구원 재임용 심사평정표

피평정자 소속

성명 :

평가영역	구분	평가사항	평가의견 (구체적으로 서술)	등급				
				A	B	C	D	E
1. 연구원으로 서의 기본적 자질		가. 연구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나. 인간관계의 원만성 다. 건강상태(연령참작) 등						
2. 연구 또는 강의능 력 과 실적	연구 연구원	가. 연구실적의 양 나. 연구실적의 질 다.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정도 등						
	강의 연구원	가. 교수능력 나. 교수의 열의와 수업진행상태 다. 교육효과(학생반응 등) 라. 학습자료 활용도 마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정도 등						
3. 기 타		가. 출퇴근 상황 나. 근무자세 다. 학내외 행사참여 등						
계								
연구 및 강의실적								
연구 실적	저자명	제목	게재지 명	발행 기관	발표 연월일	등 재 여 부	인정 점수	
강의 실적	20 . 학기		20 . 학기					
	주당 시간		주당 시간					

※ 평가영역별 해당 등급에 “○” 를 표시함

위 연구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 :

(인)